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4서식] <신설 2022. 5. 19.>

농업회사법인
합명[ ] 합자[ ] 유한책임[ ] 유한[ ] 주식[ ] 회사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20일

신고인	성명(농업생산자단체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		전화번호
법 인	법인명		전화번호
	소재지		
	변경사항	명칭[ ] 목적[ ] 사업[ ] 사무소의 소재지[ ] 임원의 성명[ ] 출자 총좌수·총주식수, 납입한 총 출자액[ ] 출자액의 납입방법·산정방법과 사원·주주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[ ] 해산 사유(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[ ]	
신고내용	첨부서류 참조		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설립신고한 사항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.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법인 인감증명서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작 성 방 법

해당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이용합니다.

처 리 절 차

변경신고서 작성	→	접 수	→	서류 확인 및 검 토	→	결 재	→	변경신고확인증 발급
신고인		처리기관 (시장·군수·구청장)		처리기관 (시장·군수·구청장)		처리기관 (시장·군수·구청장)		처리기관 (시장·군수·구청장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